



제 429국회 (정 기 회)
제 4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79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7. 18.
3. 회부연월일 : 2025.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잦은 이상기후 발생과 재난 발생 유형의 복합 다양화 추세에 따라 안전산업 시장 수요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임.

그러나,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대부분이 중소·영세하여 민간 주도의 자발적 기술개발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기술 확보, 제품인증, 판로개척 등 재난안전산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업무 감독 근거를 함께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3조의2(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u> <u>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재난안전산업의 진흥과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지원</u> <u>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u> <u>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연</u>

현 행	개 정 안
	<u>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u> <u>4.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및 수 요 조사 지원</u> <u>5.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조사·분석 및 정보의 관리 지 원</u> <u>6.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u> <u>7. 재난안전산업의 창업·사업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u> <u>8.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 지의 지정·조성 지원</u> <u>9.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재난안 전제품 인증 및 사후관리와 활 성화 지원</u> <u>10. 재난안전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u> <u>1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사업</u> <u>12.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u>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3(진흥원에 대한 감독 등)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함.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4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¹⁾에 따르면,

1)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산업 전반의 실태를 조사하

2023년 말 기준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총 76,429개이고, 산업 종사자 수는 476,255명이며, 산업 전체 매출액 총액은 59조 397억원으로 파악됨.

[2017~2023년 재난안전산업 관련 주요 통계 지표]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사업체 수	산업 종사자 수	산업 매출액
2017년	59,251	374,166	418,537
2018년	67,161	388,515	438,336
2019년	71,038	410,319	473,493
2020년	64,141	393,010	437,140
2021년	73,897	440,746	523,912
2022년	77,810	463,734	589,028
2023년	76,429	476,255	590,397

(자료 : 행정안전부 연도별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동 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 분야 주요 지표의 소폭 성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전체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중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사업체는 58,033개로 약 76%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중소·영세업체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체 사업체 수의 0.9%에 불과한 650개사만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여전히 산업 전반의 진흥·발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진흥·발전 관련 정책 및 업무는 행정안전부

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의 다음 연도 초에 해당 결과를 공개·발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안전정책국 재난안전산업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유관 단체로는 현행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²⁾를 비롯하여 한국방재협회 등이 있어 일정한 정책 및 업무의 경우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범위가 예측하기 어렵게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민간의 재난안전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진흥·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이 진행되고 있음.

이 중 현재 재난안전산업에 속한 사업체들이 주로 중소·영세함에 따라 민간 주도의 기술 및 제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산업의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은 각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그 설립 근거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산업 진흥 관련 주요 전문기관 현황]

부 처	전문기관	근거 법률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농림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한식진흥원	한식진흥법 제16조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국토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
	건축진흥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5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법 제33조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자료 :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재난 안전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난안전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등 찬반 의견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발전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전문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연구개발(R&D), 기술 인증·평가 등을 외부기관이나 민간위탁³⁾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과 통일성, 공신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⁴⁾.

2025년 재난안전산업 분야 진흥·발전 관련 업무 현황을 보면, 재난안전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신기술평가 및 제품 인증, 판로 개척을 위한 제품·기술 수요조사 등 주요 정책 업무가 외부기관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3.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운영
 5.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6. 제16조에 따른 인증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7. 제20조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8. 제2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9.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 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정과제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의 실천과제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인력·조직·산업) 강화’에 진흥원 설치 포함

또는 민간기관 위탁 집행 형태로 수행되고 있어 관련 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5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진흥·발전 관련 업무 위탁 집행 사례]

구 분	수탁기관
재난안전기업 컨설팅(창업·사업화 지원)	한국능률협회
재난안전 신기술평가	한국방재협회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제품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 행정안전부)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발전 관련 업무는 기존 국가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수행함이 바람직하고, 별도의 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⁵⁾.

참고로 현행법(2022. 1. 4. 제정, 2023. 1. 5. 시행)의 제정안 심사 당시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서영교의원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안소위 심사(2021.11.24.) 과정에서 진흥원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법 제정 이후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되면서 해당

5) 다만, 다른 산업 분야의 사례 중 산업 진흥·발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기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구 분	산업 진흥·발전 업무 수행 기관	연구기관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국립기상과학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내용이 삭제된 대안으로 의결(본회의 의결 2021.12. 9.)된 바 있음.

한편, 현행법의 시행으로 2024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산업 진흥·발전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흥원의 사업 수행 범위와 현행법 상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의 업무 수행 범위⁶⁾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하는 산업 진흥·발전 정책의 집행 보조기관으로서 동 협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3억 7,300만원, 2031년 48억 1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25억 7,600만원(연평균 45억 1,500만원)으로 추계함⁸⁾.

6)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
5. 재난안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산업협회가 설립 초기 단계에 있고, 회원 사업체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임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형태의 전문기관 설립이 산업 진흥·발전 목표에 더 적합한 수단이라는 입장임.

8) 행정안전부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고 있는 유사기관(한국섬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현황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의 정원을 36명(원장 1명, 직원 35명)으로 가정하고, 보수·기관부담금·퇴직충당금·기본경비·사무실 임차료에 한정하여 추계함.

따라서 진흥원 설립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의 산업의 진흥·발전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과 같은 주무부처 중심의 정책 수립과 외부·민간기관에 대한 위탁 집행 방식, 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전문기관 설립에 따른 진흥·발전 정책 집행기관의 일원화 방식, 기존 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직·기능의 확대 개편을 통한 집행 방식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전문기관의 설립에 대해서는 설립 방식 및 비용 등 제반 사정과 관련 부처·산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진흥원의 사업 수행 범위(안 제13조의2제4항)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진흥원의 사업 수행 범위에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지원’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⁹⁾ 동 연구원의 소관 업무에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9)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소관 업무)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시험·연구 사업과 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지원
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
6. 잠재 재난위험 발굴·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7.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8.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복합재난 연구개발 총괄·조정 업무의 지원
9.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 9의2. 지진대책 관련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10.-19. (생략)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그 범위가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진흥원과 재난안전연구원 비교]

구 분	재난안전산업진흥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설립근거	개정안 제13조의2	「책임운영기관법」 제2조
설립목적	재난안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실용적 재난관리기술 및 정부 재난 안전관리 정책 연구개발 지원
조직유형	공공기관	정부조직
직원신분	민간인	공무원

(자료 : 행정안전부)

따라서 진흥원을 설립한다면 진흥원에서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정책, 신기술 및 제품 인증 등 산업 육성 및 진흥·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안전정책 및 기술연구 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각 기관의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전공 분야별로 채용된 연구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기업 지원 등 산업 진흥 업무 수행에는 한계가 있으며, 2019년 업무 영역 협의를 통해 연구원의 소관 업무에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운영규정에서 삭제한 바 있어 진흥원이 설립되더라도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셋째, 진흥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규정(안 제13조의3 제3항)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때, 검사 절차의 정당성 확보하는 다른 입법례와 같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표시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소속 공무원의 장부 검사 등에 증표를 표시하게 하는 입법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5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u>권한을 표시하는 증표</u>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의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u>권한을 표시하는 증표</u>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49